

#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상업등기법」(법률 제20437호, 2024. 9. 20. 공포, 2025. 1. 31. 시행) 및 「상업등기규칙」이 등기사무 처리의 간소화, 전자증명서 발급방식의 변경,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의 도입 등의 내용으로 개정 또는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
-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 소재지 문구를 삭제함(안 제5조의3제1항제2호)
-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본인

이 직접 발급받게 됨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(안 제5조의8)

- 「상업등기규칙」 제1조의2제7호에 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 등을 도입함에 따라 보안매체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의9 신설)
-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및 안 제5조의9에 따른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9항)

#### 4.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200원으로 하고,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하며,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100원으로 한다.
- ②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한다.

제5조의3제1항제2호 중 “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”를 “주된”으로, “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”를 “본점이전등기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 
새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

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8(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) 「상업등기법」 제17조제2항(「비송사건절차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

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.

제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9(보안매체 발급수수료) 「상업등기규칙」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,000원으로 하고,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신청하는”을 “신청(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)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”를 “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범사업의 특례)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제1항, 제5조의8, 제5조의9,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례)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(부칙 제2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)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인감증명서)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2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하고,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100원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의3(상업등기 신청수수료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5조(인감증명서)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200원으로 하고,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하며,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1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「상업등기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,000원으로 한다.</p> <p>제5조의3(상업등기 신청수수료) ①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2. 본점(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)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 등기

<신 설>

② (생략)

1. ~ 3. (생략)

제5조의8(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)

① 「상업등기법」 제17조제2항 (「비송사건절차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상업등기법 제17조제3항, 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5항에서 정한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경우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3,000원으로 한다.

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

2. -----주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본점이전등기

3.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이전등기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8(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)

「상업등기법」 제17조제2항 (「비송사건절차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.



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,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, 금융기관 계좌이체,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~ ⑧ (생략)

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⑩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신청(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)하는 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  
-----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-----  
-----  
-----.

⑩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79